	<b>대학원 원격수업 운영규정</b>	제정일	2018.12.01.
		개정일	2025.01.02
		주관부서	대학원교학처

**제1조(목적)** 본 규정은 백석대학교 대학원 (이하 “대학원” 이라 한다) 원격교육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본 규정은 대학원 교육과정에 의해서 개설되는 강좌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교육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적용한다.

**제3조(정의)** ① ‘원격수업’ 이라 함은 강의, 질의 및 토의, 출석확인, 과제물 제출 등의 수업활동이 강의실이 아닌 서로 다른 시간과 다른 공간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.

② ‘원격수업병행강의’ (Blended Learning)이란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을 혼용하는 교과목을 말한다.

**제4조(원격수업 운영)** ① 원격수업의 수강인원은 강좌 당 최대 120명 이내로 한다.

② ‘원격수업’ 과 ‘원격수업병행강의’ 는 그 사항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어야 하며, ‘원격수업병행강의’ 는 수업계획서 상에 각 주차별 동영상수업 또는 대면수업 여부를 표기하여야 한다.

③ ‘원격수업’ 과 ‘원격수업병행강의’ 의 개설 교과목수에 제한은 없으나, 시간표 편성시 대학원교학처에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설할 수 있다.

**제5조(원격수업 시간편성)** ① 원격수업의 운영은 일반적인 대면수업과 동일하게 운영하며, 1학점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.

② 원격수업의 1시간은 50분 이상의 강의영상콘텐츠를 편성하거나, 강의영상콘텐츠(25분 이상)를 포함한 학습활동(질의·응답, 토론, 퀴즈 등)으로 50분 이상을 편성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출결관리)** 원격수업 각 주차별 수강기간은 8일(매주 월요일 ~ 다음 주 월요일)을 원칙으로 하며, 출결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.

① 주당 제공되는 강의 전체를 수강하였을 때 해당 주차에 대해 출석으로 인정한다.

② 수강 기간 내에 강의 일부만 수강한 경우 지각으로 처리한다.

③ 출석인정 및 결석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면수업에 준하여 적용한다.

④ 제3자에 의한 대리출석을 금지한다.

**제7조(성적평가)** 중간고사, 기말고사, 과제제출 등 성적평가는 수업계획서에 근거하여야 하며,

온라인(사이버캠퍼스)으로 시행한다.

**제8조(콘텐츠 관련)** ① 원격수업을 위한 강의콘텐츠는 담당교원이 직접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강의내용 중 외부콘텐츠 또는 담당교원이 해당과목의 강의목적으로 제작하지 않은 콘텐츠를 탑재한 경우는 강의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

③ 필요시 별도의 사업으로 원격수업 강의콘텐츠를 개발 및 제작할 수 있고, 이때 개발되는 콘텐츠에 대하여는 사용권과 저작권이 학교에 귀속되고, 교수자가 자체 제작한 콘텐츠에 대하여는 대학이 사용할 수 있다.

**제9조(K-MOOC강좌에 대한 학점인정)** 본 대학에서 개발한 K-MOOC 강좌에 대하여 대학원 교육과정에 편입되어 있거나, 대체 교과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① 학점인정이 되는 K-MOOC 강좌를 운영할 경우에는 해당 학기에 정규수업으로 개설되어야 하며, 운영교수에게는 학점당 시수를 부여한다.

② 수강생은 본 대학 전산시스템에서 수강신청을 하고, K-MOOC 플랫폼에서 해당 학기 내에 강좌를 수강하여야 한다.

③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K-MOOC 플랫폼에서 해당 강좌를 이수하고, 이수에 따른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한다. 또한 필요시,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출석하여 오프라인 정기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준법의무)** 담당교수와 수강학생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저작권 또는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.

① 담당교수의 사전 승인 없이 수업을 녹화하여 보관하는 행위

② 수업 영상이나 수업을 위해 제공된 자료를 제3자에게 송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

③ 원격수업 중 담당교수 또는 수강학생의 이미지나 영상을 캡처하여 보관하는 행위 및 캡처한 이미지나 영상을 제3자에게 송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

④ 사이버캠퍼스(LMS) 아이디나 비밀번호 또는 실시간화상강의 주소나 아이디, 비밀번호를 해당 교과목에 수강하지 않은 제3자에게 알려주는 행위


**제15조(준용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14조의 2와 본 대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[대학원 원격수업 운영 규칙]은 폐지한다. 다만, 종전의 대학원 원격수업 운영 규칙에 의하여 기 시행된 내용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#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4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규정의 전면개정으로 종전의 「대학원 원격수업 운영 규정」은 폐지한다. 다만, 종전의 대학원 원격수업 운영 규칙에 의하여 기 시행된 내용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##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②(법인 분리 설립허가에 따른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교육부 고등직업교육정책과 -8699(2024.12.11.) 「학교법인 천안백석학원 법인 설립허가 알림」에도 불구하고 규정의 적용 등은 종전 내용을 적용한다.